가족 간병(돌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병(돌봄)]

『가족 간병(돌봄)』 콘텐츠는 가족 내 돌봄 대상자가 있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① 돌봄 주체가 아동 · 청소년 · 청년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② 돌봄 대상자가 일반 환자 · 노인 · 장애인인지, 그리고 ③ 이용 체류시설이 병원 · 요양원 · 거주시설인지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휴가 · 휴직, 통합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대상과 이용 방법 등 핵심 법령 정보를 안내합니다.

가족 간병(돌봄) 1
1. 가족간병, 누가 하고 있나요? 4
1.1. 아동·청소년·청년 간병인 4
1.1.1.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4
1.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1
1.2. 근로자 간병인 14
1.2.1. 가족돌봄휴직 14
1.2.2. 가족돌봄휴가 16
1.2.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8
2.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 20
2.1. 일반환자 간병 20
2.1.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
2.1.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3
2.1.3. 긴급돌봄 지원사업 24
2.2. 노인 간병 26
2.2.1. 지역사회 통합돌봄 26
2.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31
2.2.3.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33
2.3. 장애인 간병 35
2.3.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35
2.3.2. 지역사회 통합돌봄 38
2.3.3.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40
3. 어떤 체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42
3.1. 일반병원 이용 42
3.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2
3.2. 요양원 등 이용 43
3.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43
3.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46
3.3.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46

1. 가족간병, 누가 하고 있나요?

1.1. 아동·청소년·청년 간병인

1.1.1.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 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①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년(34세 이하) 고립·은둔 아동·청년(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13-64세)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을 포함함
지원 내용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건강증진 등
지원 방식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http://www.mohw2030.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 비교

-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은 개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제도에서 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법령	나이 기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18세 미만인 사람
	「형법」 제274조	16세 미만의 자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9세 미만의 사람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위기아동·청년”이란?

- **34세 이하**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아래 1.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3. **(그 밖에 대상)**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현재 “청년미래센터”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업무의 전담조직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26년에 8개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3.16.)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참조].

지원 대상

▪ **(가족돌봄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다음과 같은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2. 돌봄대상가족과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다만,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 **(고립·은둔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3조제1항제2호).

1.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 결과 및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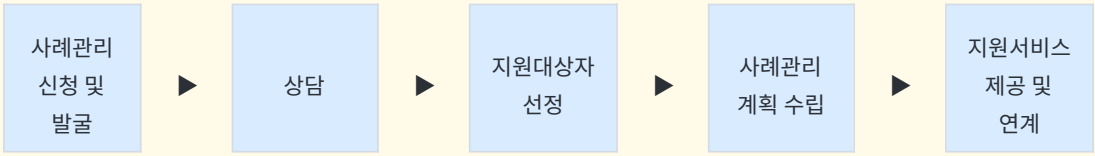
2. 개발된 과학적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의 절차**



※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 (신청)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은 직접 또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전담조직의 장은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참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교원, 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상담

▪ 사례관리를 위한 신청 및 발굴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해당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제1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지원대상자 선정

▪ 상담을 마친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결과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 전담조직의 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마다 맞춤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은 수립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주거 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청함 1.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급방법) 1. 위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함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다만, 등급판정기준 중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가능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고립·은둔 아동 ·청년 관련 지원	과학적 척도 개발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프로그램 유형)**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6년 7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계속하여 지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지원 요건 및 내용

구 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요건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13세 이상~34세 이하 청(소)년으로,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다만, 자기돌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함) ※ 12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은 드림스타트에서 맞춤형 지원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으로,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에서 자가진단 결과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및 그 가족의 경우 ※ 9세 이상~18세 이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지원 내용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서비스연계) 돌봄대상** **아픈 가족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돌봄청(소)년에게 5대 서비스(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및 일자리)를 연계함**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 **신청 방법**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 및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인포그래픽』 2쪽]

1.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6쪽).

▹ 해당 사업에서는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이 포함되며, 이하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쪽 참조).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부상 상태의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16쪽 참조).

구분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가족돌봄청년
1.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다만,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2.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3. 욕구기준	**(아래 ①~②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아래 ①~③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①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원 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다음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를 별도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0쪽 참조).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용 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신청 절차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4쪽).

※ 한 가정 내에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동시 서비스 신청 여부

Q.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이 중장년분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각 동시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해당 청년이 돌보는 부모 등(중장년)에 대한 돌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한 분의 중장년에게 두 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98쪽]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병(돌봄) 대비하기: 질환 정보 및 간병보험

간병(돌봄) 대상 가족의 질환이나 상태에 관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 국민건강보험 『가족 돌봄 안내서』,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www.nrc.go.kr/portal/main.do)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보험(제3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입원한 경우 간병비를 보상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는 상품)을 통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간병인

1.2.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근로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① 가족돌봄휴직, ② 가족돌봄휴가, ③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의 사유로 인해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	1회 30일 이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연간 최장 10일(기간 연장 시 연간 최장 20일)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가 되도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연간 최장 90일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휴직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이 제한되는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

Q. 어머니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고령이셔서 제가 대신 간호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아버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아버지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369쪽 및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8, 2018.3.13. 참조]

※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가족돌봄휴가

긴급한 경우 연간 최장 1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참조).

휴가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 이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간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기간의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 ※ “고용정책심의회”란?
>
>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심의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근로자는 위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함)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위 1.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사유

▪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단서).

>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휴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내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참조).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단축 기간

▪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본문).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3항).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

2.1. 일반환자 간병

2.1.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반환자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 가정 내에서 일반환자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②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③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6쪽).

▹ 해당 사업에서는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이 포함되며, 이하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쪽 참조).

지원 대상

▪ 다음의 1.부터 4.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부상 상태의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16쪽 참조).

구분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가족돌봄청년
1.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다만,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2. 연령기준	13~64세	39세 이하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3. 욕구기준	**(아래 ①~②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아래 ①~③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①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아래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원 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다음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를 별도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0쪽 참조).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용 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신청 절차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4쪽).

>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11쪽 및 101쪽 참조).

> ※ "요양보호사"란?
>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49쪽).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함. 다만,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함)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75쪽).

구분	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 절차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52쪽).

이용 방식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을 하여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지급되며,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71쪽 및 75쪽 참조).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69쪽).

-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한 상황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다음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5-26쪽).

	요건	내용
1	긴급성 (한시성)	**·다음 ①~④ 중 하나 이상 충족이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한시적 돌봄 필요**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사유로 한시적 돌봄 필요** **④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시) 주요 위기상황**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재난피해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른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2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보충성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4	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지원은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3세 이상 일반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함** *** 다만, 13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 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구분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절차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방식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승인되면 바우처가 지급되며, 광역지원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매칭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우처로 결제하도록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62쪽).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화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50-51쪽).

> ※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노인 간병

2.2.1.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 가정 내 노인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④ **가족요양비**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우선지원대상자

• 현재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절차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제도 개요-절차]

신청 및 발굴

▪ **(지원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신청방법].

▪ (직권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신청이 어려운 다음의 사람에 대한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발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퇴원환자 등의 연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조사 및 종합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참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또는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조제1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통합지원 제공 및 모니터링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4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노인 참조].



※ 26년 10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주황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재가급여 종류

▪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그 밖의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함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제공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자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비율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콘텐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

>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및 제23조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가-2 및 제23조제4항·제5항 전단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가-3 및 제23조제6항 참조).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겸업 허용 여부

Q.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이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 참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요양보호사』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자격 취득 후 활동-가족인 요양보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란?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24조제1항 참조).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비용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 그 밖에 가족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급여종류 및 내용-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장애인 간병

2.3.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 가정 내 장애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② 통합돌봄 제도, ③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 6세 이상의 사람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3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보전급여"란?
>
> "보전급여"란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3쪽).
>
> 보전급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4쪽).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

구분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함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활동지원급여 이용 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과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제도소개-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이용 방식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가 매월 지원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77쪽).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2쪽).

※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이동 편의지원-보행 편의지원-활동지원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우선지원대상자

- 현재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절차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통합돌봄 제도 개요-절차]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5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장애인 참조].



※ 26년 10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노란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노인 간병-통합돌봄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 활동지원인력이 다음의 관계에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도 가능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함)

▪ 이와 같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95쪽).

※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 참조).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본문).

-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단서).

> ※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체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3.1. 일반병원 이용

3.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1항 참조).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 ▪ 간병비 부담 경감: 개인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 없이, 입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됨
>
> ▪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전담하여 케어하고, 간호인력을 일반병동보다 많이 배치함
>
> ▪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병원시설도 환자 중심으로 쾌적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므로 외부인이 상주하지 않아 철저한 감염관리가 됨
>
> ▪ 보호자 생활안정: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됨
>
> [「의료법」 제4조의2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참조]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9쪽).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제공 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본문).

- 다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함)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병원에 입원 시 입원비·진료비와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왔고, 이에 정부는 일반 병원의 급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요양병원의 만성질환 환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환자의 비율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하여,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9. 22.)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참조]

※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요양원 등 이용

3.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지원

▪ 시설급여는 다음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구분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교**

구분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개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이용 목적	돌봄, 일상생활 편의	의료적 치료
입원 자격	장기요양등급 필요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의료인 상주	X	O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참조]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제공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자		수급자 ↓ ↑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

▹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비율·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콘텐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3.3.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구분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소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실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입소 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및 이용료 지원"이란?

▪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비를 지급하고 입소 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참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방식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

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관 현황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 시스템(https://nise.go.kr/onmam)-기관정보-복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의 <장애인 시설 지원-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